금융위원회고시 제2015-00호

#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금융투자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편에 제1-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-9조(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대상) 영 제14조의4제3항제2호에서 "금 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"이란 영위하는 사업의 수익 지분 중 중소기 업의 비중이 70% 이상인 것을 말한다.

제2-14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, 전업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(온라인소액투자중 개업 이외의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자를 말한다)의 출자에 대한 승인업무는 금융감독원장이 수행한다.
 제4편의2(제4-104조부터 제4-112조까지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편의2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

- 제4-104조(등록요건) ① 영 제118조의4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,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, 그 밖의 물적 설비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2의2 와 같다.
  - ② 영 제118조의4제4항 본문에 따른 대주주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3 제1호 및 제4호와 같다. 이 경우 별표 3 제1호 중

- "금융투자업"은 "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"으로, "인가"는 "등록"으로, " 인가업무단위"는 "등록업무"로 본다.
- ③ 영 제118조의4제4항 단서에 따라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 대주주의 세부요건은 영 제1 18조의6제2호 각 목과 같다.
- 제4-105조(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)영 제118조의5제5항에 따른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 등록신청서(첨부서류를 포함한다)는 별지 제3의4와 같다.
- 제4-106조(내부통제기준의 설정) 영 제118조의8제1항제7호에서 "금융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  - 1. 온라인소액증권 모집계약의 체결·해지 등에 대한 처리절차·방법이나 기준에 관한 사항
  - 2.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대한 게재내용 사실 확인 업무의 공정한 영위 및 이해상충방지 등에 관한 사항. 이 경우 업무 담당직원의 적격 기준. 일반적인 조사·검증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- 3. 온라인소액증권 청약의 접수, 청약가능여부 통지, 배정 등에 대한 처리절차·방법이나 기준에 관한 사항
  - 4.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의 모집의뢰내역 및 투자자의 청약주문내역 통지 등 중앙기록관리기관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절차나 기준에관한 사항
  - 5. 언론기관 등에 대한 업무관련 정보의 제공 절차나 기준에 관한사항

- 6. 투자자 신용정보의 관리 · 보호에 관한 사항
- 7. 투자자가 제기한 각종 고충·불만사항 및 투자자와 금융투자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의 처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
- 제4-107조(청약에 관한 내부통제)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청약의 처리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 함하여야 한다.
  - 1.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청약을 처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지 아니할 것
  - 2. 제1호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투자자의 청약을 공정하고 신속·정확하게 접수·처리할 수 있는 체계와 이를 점검·확인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할 것
  - 3. 청약 방법, 투자한도, 전매제한의무 및 그 예외 등을 투자자가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것
  - 4. 청약을 접수, 집행하는 경우 투자자별 투자한도, 청약증거금 납입확인 등에 대한 확인 및 관리를 통해 결제가 적절하게 이행될 수있도록 할 것
  - 5. 투자자로부터 청약을 접수받아 처리·전달하는 경우 투자자가 청약에 대한 처리상황, 체결내역을 알 수 있도록 할 것
  - 6. 투자자의 금융거래내역 등이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7. 전산·통신설비의 장애로 인하여 투자자의 청약이 처리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장애

- 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처리방안을 수립·운영할 것 8. 청약과정을 전산화함에 있어서 전산처리내용이 당해 업무에 적용 되는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것
- 9. 투자자의 청약이 청약 신청내용과 달리 체결되었거나 또는 체결가능한 청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내용 및 처리대책을 지체없이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그 증빙자료를 3년 이상 보관·유지할 것
- 10. 그 밖에 청약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접수, 처리 집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세부사항을 준수할 것
- 제4-108조(정보제공기준 등에 관한 내부통제) 정보제공기준 등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의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 편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2-28조, 제2-29조, 제2-31조, 제2-35조, 별표 6(준법감시인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)을 준용한다.
- 제4-109조(업무방법·내부통제기준의 변경 등) ①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업자는 영 제371조제3항제13호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에 관 한 업무의 방법 또는 내부통제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변경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일부터 2주 이내에 금 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 -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이 투자자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 의에 따라 당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.

-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.
- ④ 협회는 표준업무방법서를 작성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.
- 제4-110조(투자자에 대한 통지) 법 제117조의7제8항에서 "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"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.
  - 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(이하 이 항에서 "전자 우편등"이라 한다)으로 투자자별로 청약 및 발행내역을 제공할 것 가. 전자우편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
    - 나. 홈페이지
  - 2.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전자우편등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. 청약금액, 청약수량, 청약증거금 등 청약에 관한 내용
    - 나. 청약기업 증권발행 성공여부, 실제 모집금액 등 증권발행에 관 한 내용
    - 다. 투자자에게 배정된 금액 및 수량, 납입기일 등 배정에 관한 사항라. 청약증거금 반환금액 및 일정 등 반환에 관한 사항
- 제4-111조(청약증거금의 예외적 양도) 영 제118조의12제2호에서 "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  - 1.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제4-38조제3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
- 2. 금융감독원장의 지시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
- 제4-112조(반환의 사유) 영 제118조의14제3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  - 1.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증권의 발행을 철회한 경우
  - 2.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게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
  - 가. 부도
  - 나. 영업의 전부정지
  - 다. 해산
  - 라. 파산 및 회생절차의 개시신청
  - 마.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증권발행이 불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
  - 3. 그 밖에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별표2의2을 별지1과 같이 신설한다.

별지 제3호의4 서식을 별지2와 같이 신설한다.

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# [별지 1]

<별표 2의2>

<u>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</u> 인력.물적설비.사업계획.이해상충방지체 계에 관한 요건

(금투업규정 제4-104조 제1항 관련)

## 1. 인력에 관한 요건

- 가.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영위함에 있어 투자자 보호 및 적절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확 보할 것
  - (1) 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」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 기관에서 해당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
  - (2)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과정(대학원 등)이나 연수과 정을 이수하고 해당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
  - (3) 그 밖에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상기 인력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자
- 나.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 다음 분야별 인원수 이상의 전문인력을 배치할 것. 다만, 법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기존 금융투자업무 관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음.
  - (1)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1명
  - (2) 전산 2명
- 다.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.

- (1) 최근 5년간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기업이었거나 불건전한 금융거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의 대주주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. 다만, 이에 관한 책임이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.
- (2) 최근 5년간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 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

## 2. 물적 설비

## 가. 전산설비 및 통신수단

- (1) 주전산기, DB서버, 저장장치, 단말기, 전용회선 등 업무관련 전산설비가 안정성 및 성능이 충분히 검증되었으며, 향후 영업 의 급속한 확대에도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구축되어 있을 것
- (2) 침입탐지, 침입방지시스템, 방화벽 등 보안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
- (3) 정보이용자 확인 및 전산실 출입통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을 것
- (4)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백업장치가 구축되어 있고, 백업자료가 별도 장소에 보관·관리되고 있을 것

# 나. 업무공간과 사무장비

- (1) 부서인원 대비 충분한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를 갖출 것
- (2) 내부기관 및 감독기관 등이 감독·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적 장애가 없을 것

## 다. 보안설비

- (1) 전산설비, 통신수단, 그 밖에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검증된 보안설비를 갖출 것
- (2) 파업 등 불시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(Contingency Plan)이 마련되어 있을 것

## 라.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보완설비

- (1) 정전·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가 확보되어 있을 것
- (2) 비상사태 발생시 즉시 구현이 가능한 비상계획(Contingency Plan)이 마련되어 있을 것

## 3. 사업계획

## 가. 내부통제장치 및 투자자 보호

- (1) 경영진·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방향, 이사회와 경영진의 관계, 감사의 권한과 책임 등이 투명하고, 투자자 또는 주주 보호와 재무 및 영업의 건전성 유지에 적합할 것
- (2) 영업내용·규모에 맞게 임직원의 법규준수, 위험관리 및 임직원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적절한 감독 및 내부통제체계가 구축되 어 있을 것
- (3) 사외이사,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등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을 것

# 나. 법령 및 건전 금융거래질서 준수

- (1) 영업내용 및 방법이 법령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에 부합할 것
- (2) 사외이사, 감사위원회 구성 등의 지배구조가 법령에 위반되지

아니할 것

(3)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임원이 법령 위반 또는 건전 금융거래 질서 위반 등의 사실이 없을 것

## 4. 이해상충방지체계

- (1) 내부통제기준에 반영된 이해상충의 파악·평가·관리 체계가 합리 적이고 검증가능할 것
- (2)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등이 적정할 것
- (3) 내부통제기준의 이해상충 관리 체계 등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이 이루어 질 것
- (4) 그 밖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영위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

# [별지 2]

### <별지 제3호의4>

##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등록신청서

(금투업규정 제4-105조 관련)

#### 1. 상 호

### ■ 첨부서류

- 1-1. 정관(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) 1부
- 1-2. 법인등기부등본(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) 1부
- 1-3. 발기인총회,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 또는 등록신청의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

#### 2. 본점의 소재지

### ■ 첨부서류

2-1. 본점의 명칭 및 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1부

### 3. 대표자 및 임원

임원수 : 명(상근: 명, 비상근: 명)

직위	성명	주민등록번호	소유주식수	주요	상근	담당	전문인력	임원자격
			(비율)	경력	여부	업무	여부	적합여부

### 기재상의 주의

1. 임원자격은 법 제24조 각 항 및 이 규정 별표 2의2 제1호다목의 자격을 말한다.

#### ■ 첨부서류

- 3-1.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(신원조회 관련서류 포함) 각 1부
- 3-2. 임원자격에 적합함에 관한 확인서 및 증빙서류 각 1부

#### 4. 경영하려는 등록업무에 관한 사항

### ■ 첨부서류

4-1. 등록업무의 종류와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 각 1부

#### 5. 재무에 관한 사항

#### ■ 첨부서류

- 5-1.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(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,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설립일로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) 1부
- ※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5-1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#### 6.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
### ■ 첨부서류

- 6-1.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과 관련한 구체적 업무방법(투자광고, 법 제117조의10제2 항 및 제4항에 대한 자료제공과 관련한 업무절차, 확인방법 등을 포함한다) 등 에 대해 기재한 서류 1부
- 6-2.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관련기관(중앙기록관리기관, 예탁결 제원 등을 포함한다)과의 계약체결현황 및 계약서 각 1부
- 6-3. 내부통제장치(내부통제기준을 포함한다)와 투자자 보호에 대해 기재한 서류 각 1 부
- 6-4.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및 발행인·투자자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관련 법령 준수여부를 확인, 점검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 기재한 서류 1부

#### 7. 인력과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

- 전문인력의 명단(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요경력, 전문자격내용 등)
- 물적설비 현황(사무공간 배치현황, 전산설비 내역, 보안설비 및 보완설비 등)

#### ■ 첨부서류

- 7-1. 전문인력의 경력증명서 및 자격 확인 서류 각 1부
- 7-2. 사무공간, 전산설비 등의 임차계약서 사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의 서류

#### 8. 대주주나 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관한 사항

#### ■ 첨부서류

- 8-1. 등록신청일(금융투자업자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에 대한 등록신청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)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 및 비율을 기재한 서류 1부
- 8-2. 대주주나 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법 제117조의4제2항제6호의 요건을 갖 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

#### 9.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

#### ■ 첨부서류

- 9-1.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·평가·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장치에 관한 서류 1부
- 9-2. 이해상충행위가 발행하지 않도록 적절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확인 서류 1부
- 9-3. 그 밖의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서류

#### 10. 그 밖의 기재사항

#### ■ 첨부서류

- 10-1. 합작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(외국인과의 합작을 통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) 사본 1부
- 10-2 외국인투자인가서(해당되는 외국인의 경우) 사본 1부
- 10-3.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등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 1부
- 10-4.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
- ※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국문으로 번역된 요약본을 첨부하여야 하며, 외국에서 작성된 서류는 현지의 공증을 받아야 함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117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대리인)

서명 또는 인

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 &lt;신 설&gt;</u>	제1-9조(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
	대상) 영 제14조의4제3항제2호
	에서 "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
	준"이란 영위하는 사업의 수익
	지분 중 중소기업의 비중이 70%
	이상인 것을 말한다.
제2-14조(출자승인 등) ①~⑧	제2-14조(출자승인 등) ①~⑧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, 전업온라인
	소액투자중개업자(온라인소액투자
	중개업 이외의 금융투자업을 영위
	하지 아니하는 온라인소액투자
	중개업자를 말한다)의 출자에 대한
	승인업무는 금융감독원장이 수행
	<u>한다.</u>
<u>&lt;신 설&gt;</u>	제4편의2 온라인소액중개투자업자
	제4-104조(등록요건) ① 영 제118
	조의4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,
	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인력과
	전산설비, 그 밖의 물적 설비 및
	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이해상충
	방지체계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
	적인 기준은 별표2의2와 같다.
	② 영 제118조의4제4항 본문에
	따른 대주주의 세부요건에 관한
	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3 제1호

<신 설>

<신 설>

및 제4호와 같다. 이 경우 별표 3 제1호 중 "금융투자업"은 "온라 인소액투자중개업"으로, "인가" 는 "등록"으로, "인가업무단위 "는 "등록업무"로 본다.

③ 영 제118조의4제4항 단서에 따라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 대주주의 세부요건은 영 제118조의6제2호 각 목과 같다 제4-105조(등록의 방법 및 절차등) 영 제118조의5제5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등록신청서(첨부서류를 포함한다)는 별지 제3의4와 같다.

제4-106조(내부통제기준의 설정) 영 제118조의8제1항제7호에서 "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말한다.

- 1. 온라인소액증권 모집계약의 체결·해지 등에 대한 처리절차· 방법이나 기준에 관한 사항
- 2.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대한 게재내용 사실 확인 업무의 공정한 영위 및 이해상충방지 등에 관한 사항. 이 경우 업무 담당직원의 적격기준, 일

반적인 조사·검증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 다.

- 3. 온라인소액증권 청약의 접수, 청약가능여부 통지, 배정 등에 대한 처리절차·방법이나 기 준에 관한 사항
- 4.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의 모집의뢰내역 및 투자자의 청약주문내역 통지 등 중앙기록 관리기관에 대한 정보의 제공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
- 5. 언론기관 등에 대한 업무관런 정보의 제공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
- 6. 투자자 신용정보의 관리· 보호에 관한 사항
- 7. 투자자가 제기한 각종 고충· 불만사항 및 투자자와 금융투 자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의 처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제4-107조(청약에 관한 내부통제)

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청약의 처리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청약을 처리하고 정당한

<u><신 설></u>

-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지 아니할 것 2. 제1호에 따라 선량한 관리 자의 주의로서 투자자의 청약을
- 사의 구의도서 누사사의 성약을 공정하고 신속·정확하게 접수· 처리할 수 있는 체계와 이를 점검·확인할 수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할 것
- 3. 청약 방법, 투자한도, 전매

   제한의무 및 그 예외 등을

  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

   설명할 것
- 투자자별 투자한도, 청약증거 금 납입확인 등에 대한 확인 및 관리를 통해 결제가 적절 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것

4. 청약을 접수, 집행하는 경우

- 5. 투자자로부터 청약을 접수 받아 처리·전달하는 경우 투자 자가 청약에 대한 처리상황, 체결내역을 알 수 있도록 할 것
- 6. 투자자의 금융거래내역 등이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
- 7.
   전산・통신설비의 장애로

   인하여 투자자의 청약이 처리

   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지

않도록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장애가 발생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처리방안을 수립·운영할 것 8. 청약과정을 전산화함에 있 어서 전산처리내용이 당해 업 무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것 9. 투자자의 청약이 청약 신청 내용과 달리 체결되었거나 또는 체결 가능한 청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내용 및 처리대책을 지체없이 투자자 에게 통지하고 그 증빙자료를 3년 이상 보관 유지할 것 10. 그 밖에 청약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접수. 처리 집행 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세부사항을 준수할 것 제4-108조(정보제공기준 등에 관 한 내부통제) 정보제공기준 등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내 부통제와 관련하여 이 편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2-28조, 제2-29조, 제2-31조, 제2-35조,

별표 6(준법감시인 관련 사항은

제외한다)을 준용 한다

<신 설>

<신 설>

제4-109조(업무방법·내부통제기 준의 변경 등) ① 온라인소액 투자중개업자는 영 제371조제3 항제13호에 따라 온라인소액투 자중개업에 관한 업무의 방법 또는 내부통제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변경한 내 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일부터 2주 이내에 금융감 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이 투자자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에 반한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 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당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대 하여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.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 한다.

<신 설>

④ 협회는 표준업무방법서를 작성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업자에게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. 제4-110조(투자자에 대한 통지) 법 제117조의7제8항에서 "금융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

법"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.

- 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(이하 이 항에서 "전자우편등"이라 한다)으로 투자자별로 청약 및 발행내역을 제공할 것
- <u>가. 전자우편 또는 그 밖에</u> <u>이와 비슷한 전자통신</u> 나. 홈페이지
- 2.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전자우편등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포함할 것
  - 가. 청약금액, 청약수량, 청약
     증거금 등 청약에 관한 내용
     나. 청약기업 증권발행 성공
     여부, 실제 모집금액 등 증권
     발행에 관한 내용
- 다. 투자자에게 배정된 금액

   및 수량, 납입기일 등 배정에

   관한 사항

라. 청약증거금 반환금액 및 일정 등 반환에 관한 사항 제4-111조(청약증거금의 예외적 양도) 영 제118조의12제2호에서 "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

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<신 설>

1.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
제4-38조제3항제1호의 사유에
해당하는 경우
2. 금융감독원장의 지시에 따라
양도하는 경우
제4-112조(반환의 사유) 영 제
118조의14제3항제4호에서 금융
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
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
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1.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증
권의 발행을 철회한 경우
2.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게
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
<u>경우</u>
<u>가. 부도</u>
나. 영업의 전부정지
<u>다. 해산</u>
라. 파산 및 회생절차의 개시
<u>신청</u>
마.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
인하여 증권발행이 불가능하
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
<u>경우</u>
3. 그 밖에 금융감독원장이 필요
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<u> <신 설></u>